

#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 개정 후속조치 요청

## 1 추진 배경

- 대다수 논문에 연구자의 '소속'만 기재하고 있어 부당한 저자표시 관련 문제가 발생할 때, 사실 관계 파악 및 사후 관리에 한계
- 논문저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「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」(교육부 훈령('18.7.17))

## 2 주요 개정내용

- (정보공개) 연구자는 논문을 발표할 경우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힘
  - ※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,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'학생'임을 논문에 밝힘
- (확인/관리) 학술단체는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,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
  - 대학의 경우에도 논문을 대학의 연구실적 등으로 활용할 경우 해당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함
  - ※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, 직위, 재학년도 표시
  - ※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, 직위도 파악
- (자료제출) 학술단체와 대학은 논문 저자 정보에 대해 교육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함

### < 논문 저자 정보 관리 체계 >

주체	주요 역할
연구자	- 논문 작성 시 소속, 직위를 밝힘 ex) 00고등학교(학생)
학술단체 대학	- 연구자가 작성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를 확인하고 관리 ※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, 직위, 재학년도 표시
대학	- 소속 교수, 연구자의 논문을 관리 시 해당 논문에 표시된 공동연구자의 소속, 직위를 함께 시스템에 등록, 관리 ※ 소속 연구자의 업적 관리 등을 위해 해당 학교 논문 시스템에 기록할 경우 공동연구자의 소속, 직위도 파악
교육부	- 매년 연구윤리 실태조사에 논문 저자 정보 항목을 포함하여 관리

## 3 각 주체별 요청사항

- (연구자) 논문 발표 시 논문에 소속과 직위를 표시('18.9부터 적용)

### < 해외 학회지 등의 경우 저자 정보 표시 방법 >

- 해외 학회지로 저자 표시 방법 등이 달라 소속과 직위를 표시할 수 없을 경우, 논문에 직위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아도 됨
- 단, 동 논문을 소속 대학에 연구결과물로 제출 시 소속과 직위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함

### < 소속 및 직위별 표시 사항(안) >

대상		표시할 사항
대학 소속	대학 소속 교수(전임/비전임)	성명/ 00대학/ 교수
	대학 소속 강사	성명/ 00대학/ 강사
	대학 소속 학생	성명/ 00대학/ 학생
	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	성명/ 00대학/ 박사후 연구원
초중등학교 소속	초중등학교 소속 학생	성명/ 00학교/ 학생
	초중등학교 소속 교사	성명/ 00학교/ 교사
기타	소속/직위가 없는 경우	성명

- (학술단체)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 시 논문 저자의 소속과 직위도 함께 표시하도록 학술지 편집규정 등 개정하고,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(소속과 직위)를 집적하여 관리
  - ※ 논문 저자가 현재 소속이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, 직위, 재학년도를 제출받아 별도로 관리
  - ※ 가급적 조속히 관련 학술단체의 규정을 개정하여 '18.9까지 규정 개정 완료 요청
- (대학) 소속 교원 등의 논문을 관리 시, 논문 저자인 소속 교직원과 공동연구자의 소속과 직위도 포함하여 집적하여 관리
  - ※ 가급적 조속히 관련 시스템 등을 개편하여 '18.9까지 시스템 등 개편 완료 요청

### < 00대학 연구결과물 집적 시스템(안) >

논문명	논문저자정보			
	1저자	2저자	.....	교신저자
#####	00대학/ 교수/ 성명	00대학/ 교수/ 성명	.....	00대학/ 교수/ 성명

현 행	개 정
<p>제5조(연구자의 역할과 책임)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</li> <li>2.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</li> <li>3.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</li> <li>4.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</li> <li>5.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</li> <li>6.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·존중</li> <li>7. 연구계약의 체결,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 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</li> <li>8.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,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</li> </ol> <p>-----</p> <p>9.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</p>	<p>&lt; 좌 동 &gt;</p> <p>9.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, 연구자의 소속, 직위(저자 정보)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</p> <p>10.</p>
<p>제6조(대학등의 역할과 책임) ①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대학등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.</p>	<p>&lt; 좌 동 &gt;</p>

<p>-----</p> <p>③ 대학등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p> <p>④ 대학등은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검증·판단하는 기구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</p> <p>⑤ 대학등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연구윤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</p> <p>⑥ 대학등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윤리 실태 조사 등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업무를 수행할 때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-----</p> <p>⑦ 대학등은 인지하거나 제보받은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하여야 하며, 교육부장관, 전문기관 및 대학등으로부터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 또는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	<p>⑦ 대학등은 학술지 발간, 학술대회 개최, 연구업적 관리 등을 할 경우, 관련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확인하고 관리하며,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요청받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</p> <p>⑧</p>
---	--